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35
----------	-------

제출년월일 : 2021. 11. 9.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참고조례(안) 개정에 따른 우리 시 현행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참고조례(안) 추가 조항 반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참고조례(안)
제11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및 제20조(수당)
- 조직개편(2021.1.1.)에 따른 별표(2,3,4)의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사전예고(결과) : 붙임5(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2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6
- 방침결정문 : 붙임7

[붙임 1]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를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 앞에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을 삭제한다.

제14조 앞에 “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을 삽입한다.

제17조 앞에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를 삽입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시민안전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윤 충 오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회재난팀장 박 순 덕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설 란 (행정 3119)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청소년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콘텐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신성장전략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혁신법무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정책과
10.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 사고	양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도로과 정수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폭염·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시민안전과 "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콘텐츠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시민안전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과
20. 해양경찰청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해양수산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양 보건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 서 직원 2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 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 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 자원순환과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 관리 총 괄 반 (17+ α 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 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 자치행정과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 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 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 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 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 관리 총괄 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 관리 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 서 직원 2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 α + β 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재난종합상황실 1명, 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마)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안산소방서			

	· 구급반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관리 총괄반 (17+a명)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 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마) 행정지원팀		· 총무과 직원 1명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 자치행정과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u> <u><신 설></u></p> <p><u>제13조 ~ 제15조 (생 략)</u></p> <p><u>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u> <u><신 설></u></p> <p><u>제16조 ~ 제21조 (생 략)</u></p> <p><u><신 설></u></p> <p>[별표 2]</p>	<p><u>제13조(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 및 이용)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제3장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u></p> <p><u>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u></p> <p><u><삭 제></u></p> <p><u>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u></p> <p><u>제17조 ~ 제22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u></p> <p><u>제23조(수당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u></p> <p><u>② 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p>

재난수습 주관부서(제5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청소년과
2 미래창조과학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신성장전략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예산법무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사회지원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 (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녹색에너지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양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정수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	안전사회지원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교육청소년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콘텐츠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신성장전략과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혁신법무과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시민안전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회계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농업정책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정책과
10. 보건복지부	가. 보건의료 사고	양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바. 미세먼지	환경정책과 정수과 환경정책과 해양수산과 환경정책과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기업지원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도로터널 사고 라.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마. 육상화물운송 사고 바. 지하철 사고 사. 항공기 사고 아.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자.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 사고	건설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도로과 정수과 대중교통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시민안전과

	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나. 화재·위험물 사고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 해양수산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통신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사회지원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권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2)협업 기능반 (a)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녹색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지원	· 안전사회지원과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 · 폭염 · 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정보콘텐츠과
17.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시민안전과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녹지과
20. 해양경찰청	바.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해양수산과
21. 질병관리청	감염병 재난	양 보건소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권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6+a명		
	반 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실 무 반	1) 상황관리 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2)협업 기능반 (a)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지원	· 시민안전과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교(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13+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 상황관리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 녹색에너지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홍보관
사) 재난관리지원	· 안전사회지원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교(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인 원	총 13+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실 무 반	1) 상황관리총괄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 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지원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 관리 총괄반 (17+a 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황 관리 총괄반 (17+a 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6명)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자원순환과 · 정보통신과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 녹색에너지과 · 공보관 · 안전사회지원과 · 교통정책과 · 양 보건소 · 자치행정과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제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원	총 6+a명
	반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 협업기능	가) 긴급생활 · 복지정책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정보콘텐츠과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 에너지정책과 · 대변인 · 시민안전과 · 교통정책과 · 양 보건소 · 자치행정과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지진(해일)·화산 시 편성기준

가. 안산시 비상단계

본부장	시장	
차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제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인원	총 6+a명
	반장	재난종합상황실 팀장 또는 담당
	1) 상황관리총괄반 (5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진파, 재난상황 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5명 - 재난종합상황실 직원 1명, 자연재난총괄부서 직원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2) 협업기능	가) 긴급생활 · 복지정책과

반(a)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 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 반	· 녹색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사회지원과
	아) 교통대책 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 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 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 찰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사회지원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종합상황실 1명, 재난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마)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반(a)	안정지원반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도로교 통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 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 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 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 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 서	
타) 수색, 구조 · 구급반	· 안산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안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1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3+α+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12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팀(5명)	· 재난상황관리반 직원 5명 · 재난종합상황실 1명, 재난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마) 행정지원팀(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 녹색에너지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지원	· 안전사회지원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통신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도로교통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피해시설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지원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교(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중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총괄반(17+a)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	· 재난상황관리반 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총괄부서, 재난

비교(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중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2단계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8+a+β명	
	반 장	과장급 1명	
	1)상황관리총괄반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 재난상황관리반 6명

명)	리팀(6명)	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마)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녹색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공보관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사회지원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	

반 (17+a 명)	및 전과, 재난상황관리팀(6명)	재난종합상황실, 재난 총괄부서,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각 2명
	다) 상황보고서 작성팀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라)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마) 행정지원팀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a)	가)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콘텐츠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	

	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난 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 협업 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 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 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 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반	· 녹색에너지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관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안전사회지원과		

	가스안전공사, (주)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	---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사회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		
통 제 관	해당 재난 주관부서 국·소·센터·본부의 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 재난 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2) 협업 기능반 (a)	가) 긴급생활 안정 지원 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 정비 반	· 자원순환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정보통신과
		라) 시설피해 응급 복구 반	· 시설관리부서(건설도로과, 하수과 등)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 반	· 에너지정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대변인
사) 재난관리자 원 지원반		· 시민안전과	
아) 교통대책	· 교통정책과		

아) 교통대책반	· 교통정책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양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자치행정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산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제2506부대, KT,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삼천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